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36
----------	------

제출일자 : 2020. 6. 9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6.25전쟁 제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고, 세부계획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1조 ‘월 5만원’ 으로 명시된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3. 조례안 : 붙임 참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시 조례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0. 5. 15. ~ 6. 4.)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수당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65세 이상 <u>국가보훈대상자에게</u> 월 5만원의 <u>보훈예우수당</u> (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u><신 설></u>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 <u>국가보훈대상자에게</u> <u>보훈예우수당</u> ----- ----- ----- ----- ----- ----- ----- ② 군수는 수당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